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13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이수진·송옥주·민형배

서영교 • 박홍배 • 김정호

박홍근 · 김성환 · 김영진

윤호중 · 김문수 · 김준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그러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자 직접 고용을 위해 주휴·사회보험료·퇴직금 등 노무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이는 이용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직접고용방식이 기존의 직업소개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필요함.

이에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

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및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4조의34(가사서비스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그 지출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가사서비스 지출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6조제1항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동법 제2조제4호의 가사근로자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사서비스 지출액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4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4호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사서비스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4조의34(가사서비스 지출액
	에 대한 세액공제) ①근로소득
	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를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
	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
	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액의 100분의 15에 해
	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가사서비스 지출액
	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 4의5. (생 략) <신 설>

5. ~ 13. (생 략) ② ~ ⑤ (생 략)

1. ~ 4의5. (현행과 같음)
4의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
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동법 제2조제4호
의 가사근로자를 활용하여 제
공하는 동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가사서비스

5.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